

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.
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자가 ½씩(예 : 150,000원 / 계약자 75,000원, 사업주체 75,000원) 균등 부담하며,
공급계약 체결 시 과세 기준의 전자수입인지를 당사에 사본으로 제출 후 원본은 공급계약서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➡ 인지세 납부

구분	내용
과세대상	* 관련법령 : 「인지세법」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-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.
납부기한	-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	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및 보관 -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및 보관 (현금 납부만 가능)

➡ 인지세 납부 세액

구분	기재금액(분양가 + 발코니 확장 금액)	납부세액	계약자 부담(50%)	사업주체 부담(50%)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7만 5천원	7만 5천원
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 5천원	17만 5천원

※ 공급계약과 관련한 사업주체 부담분(50%)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는 공급계약 체결 시 「사업주체분」 정부수입인지 수령 확인서 작성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.
※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인지세는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,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※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, 공급질서 교란행위, 통장매매,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➡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

온라인 구매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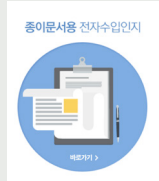
1

전자수입인지

네이버 및 그 외 포털사이트에
'전자수입인지' 검색
www.e-revenuestamp.or.kr

2

종이문서용
'전자수입인지'
선택



3

비회원 서비스 또는
회원 로그인 후
구매버튼 클릭



4

납부정보 입력
(우측 선택
방법표 확인)

문도	과세문서 종류	금액	건수	납부금액
1	부동산 등·소유권 이전	0원	0	0원
2	부동산 등·소유권 이전	0원	0	0원
3	부동산 등·소유권 이전	0원	0	0원
4	부동산 등·소유권 이전	0원	0	0원
5	부동산 등·소유권 이전	0원	0	0원

구분	내용
용도	인지세 납부
과세문서 종류	1.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금액	75,000원 또는 175,000원
건수	1건

5

출력 후 계약서에
첨부하여 보관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
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
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재발행 불가)



오프라인 이용방법

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
※ 신분증 지참

▶

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※ 용도 : 인지세 납부 / 금액 : 해당 금액 / 매수 1매

▶

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
※ 현금 납부만 가능

※ 오프라인 구매 시 반드시 지점으로 연락하여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